

##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

### 1. 개정 이유

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·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

### 2.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

가.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